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3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9.

다.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 별표 1 <신설>	○ 별표 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법률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명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세 입	◦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차입금 ◦ 그 밖의 수입금
세 출	◦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의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금 ◦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유치에 필요한 자금 ◦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자금 ◦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 리	◦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이라 함)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²⁾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제정³⁾되었음.

이에 따라 미군공여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 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⁴⁾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법률 제7854호(2006. 3. 3. 제정, 2006. 9. 4. 시행)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지 등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용·공공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하려는 것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미군공여구역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매각대금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既사용 중에 있는데, 동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한 세입(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특정한 세출(주한미군기지건설)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 중에 있으므로, 해당 수입을 관련성이 높지 않는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현행법 제14조⁵⁾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⁶⁾

이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의 매입비용의 국가 지원 사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동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 중

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6)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용·공공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음으로 ‘특정 세입·세출 연계 등으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관련 수입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세입-세출간 연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등을 세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로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 및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2024년	2025년
미군기지 이전사업			27,553	14,522
	평택기지 이전사업	용산기지 등*을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사업 * 총 13개 기지: 용산기지 등 서울 소재 9 개 기지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4개 기지	27,553	14,522
	연합토지 관리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 4개 기지 이전 및 훈 련장 대체부지매입('23년 사업종료)	-	-
미군기지 이전지원			56,837	47,660
	평택지원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기지 주변 주 민편익시설 지원사업('22년 지원 종료) * 소공원, 도로·교량정비, 방음시설사업 등 14개 분야 11,402억원('06년~'22년)	-	-
	환경조사 및 치유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문화재 조사 포함) 및 치유사업(철거비 포함)	54,223	45,349
	기타이전지원	미군부대 이사비, 사업단 운영 경상비 등	2,614	2,311
회계기금 간 거래			558,231	509,955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상환	선 건설- 후 반환 사업 순기 하 세출대비 세입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과거 차입한 공자기금 원금 상환액	484,254	432,4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과거 차입한 공자기금으로 발생한 이자 상환액	73,977	77,555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의 의
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신 설></u>	별표 1 2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문의처
02)6788-5152